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구미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안전한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 일환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운영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 참고사항

가 예산관련 : 기획예산담당관실 합의

나 규제심사 : 규제개혁 T/F팀 합의

다 기타 협의 승인 내용 : 해당 없음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 일환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이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특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정례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장터를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는 시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 1명과 유통축산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비)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용 등) 직거래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16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단체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위와 같이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 일 년

신청인 (인)

구미시장 귀하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소관 실·과		유통축산과
입 안 자	과 장	유 영 식
	계 장	김 종 성
	담당자	한 무 희 (480-5813)